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1. 회부

가.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4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6.20) : 상정 및 심의

##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영선)

### 가. 제안이유

○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1999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총 예산액은 985억 8,34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44억 3,763억으로서 136%임.

- 세출결산액은 1,057억 6,20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86억 7,55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임.

###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예산액은 911억 3,57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05억 5,343만원으로 132%임
- 세출결산액은 969억 4,159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6억 1,184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74억 4,76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8억 8,420만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88억 2,04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0억 6,373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일반회계 수납액은 1,205억 5,343만원으로 예산액 911억 3,577만원 대비 132%이며, 징수결정액은 1,232억 6,596만원으로 예산액의 135%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지방세 징수액은 102억 4,712만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84억 5,100만원대 징수액은 480억 1,627만원으로 260% 증액하였음. 이는 전년도 이월금 290억 7,662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 실제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01%의 증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95억 9,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 지방양여금 77억 6,543만원, 국도비 보조금 245억 4,553만원이 전액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액 1,205억 5,343만원으로 예산액의 132%가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로 잉여자금의 고율정기예탁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가와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등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에 기인한 것임

○ 미수납액은 29,885건에 27억 1,253만원으로서 사유는 고질 체납이 가장많은 15,736건으로 17억 358만원이고, 거소불명이 3억 2,396만원, 무재산 3억 3,802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억 7,428만원, 기타 7,267만원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202억 1,239만원에 대하여 969억 4,1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73억 131만원과 불용액 59억 6,948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액 969억 4,159만원은 일반행정비 189억 8,975만원, 사회개발비 259억 2,582만원, 경제개발비 504억 1,031만원, 민방위비 2억 5,73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5,832만원임.
  - 이월액 173억 131만원중 명시이월 120억 8,232만원은 '99가을착수밭기반정리사업 13억 8,915만원, 의료원 증축 8억 9,468만원, 평창읍 시가지정비 6억 등 65건임.
- 사고이월은 총 44건에 44억 5,414만원으로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등임
  - 불용액 59억 6,948만원은 예산현액의 5%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억 1,39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103만원, 예산절감 9억 9,709만원, 예산집행잔액 34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8만원등임.
  - 임여금은 총 236억 1,184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20억 8,232만원, 사고이월 44억 5,414만원, 계속비 이월이 7억 6,484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8,011만원, 순세계 임여금이 59억 3,041만원임.

○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에서 제시한 세출분야의 사업비 확보이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 이외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실히 집행하였다고 보아짐.

##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 수납액 138억 8,420만원은 예산액 74억 4,764만원보다 64억 3,656만원이 많은 186.4%로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 62억 1,776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로 전년도 98.7%에 비하여 0.3%낮아졌음.
- 회계별 미수납액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1,714만원, 주택사업이 5,136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2,563만원임 등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액은 74억 4,764만원임, 예산성립후 증감분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36억 6,541만원으로 지출액은 64.5%에 해당하는 88억 2,046만원이고 기타 이월액 26억 5,391만원과 불용액 14억 9,239만원으로 되어 있음.

이월액은 전액 상수도 특별회계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가 11억 5,730만원, 기타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임.

## 라.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관리

### 1) 기 금

-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 자녀 생활보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기금의 6종임.
- 1998년말 현재액은 5억 4,150만원에서 1999년도 수입액은 3억 1,652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1,100만원으로 차인잔액 8억 4,703만원임.
- 수입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액임.

### 2) 채 권

- 보유채권 현재액은 98년말 현재 41억 9,419만원에서 99년도에 9억 148만원이 발생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4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95만원이 증가하였음.

### 3) 채 무

-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98년말 현재 250억 3,193만원에서 99년도에 23억 710만원이 늘어나 99년도말 현재액이 273억 3,904만원임,

#### 4) 공유재산

○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 토지 149,797,000m<sup>2</sup> 518억 8,247만원,
- 건물 34,550,000m<sup>2</sup> 72억 5,295만원
- 기타 24건에 9백만원으로

총 591억 4,483만원 상당함.

#### 5) 물품 현재액

99년도말 물품현황은 20억 4,14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6,178만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억 3,869만원이 감소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입분야 징수결정액대비 세입 예산액이 많아 차이나는 이유는?</li><li>○ 지방채가 23억 증가한 사유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동차세등 세입추계가 많이 늘었기 때문임.</li><li>○ 방림상수도 10억, 나머지 13억 이자증가임.</li></ul>

#### 6. 토론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의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세입·세출분야 예산추계가 예산액 대비 무려 39%가 차이가 남으로써 예산사장과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월예산액이 과다발생함은 사업추진의지 미흡과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됨.
- 무려 81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므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함.
- 매년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음은 향후 우리군 재정과 발전을 악화시킬 수 있음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여 할 것임.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건의사항 : 없음
- 나. 기타 특별사항 : 없음